

## 2 신속·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

### 문 의

신용보증기금	(☎ 1588-6565)
기술보증기금	(☎ 1544-1120)
지역신용보증재단	(☎ 1588-7365)

❖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5,000만원 한도  
100% 보증 비율 및 간이심사 절차 적용

### ● 신속·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

- ◇ 지원대상 :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◇ 한도 : 5,000만원
- ◇ 우대사항 : 100%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

- 1 4.1일부터 신보·기보·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
- 2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

☎ 문의사항 :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

기관명	전화번호	기관명	전화번호
신용보증기금	☎ 1588-6565	지역신용보증재단	☎ 1588-7365
기술보증기금	☎ 1544-1120		

# 「영세 중소기업·소상공인 신속·전액보증 프로그램」 시행

(‘20. 3. 31., 기술보증부)

## I. 목적

-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전액보증을 지원\*하여 자금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

\*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(‘20.3.19., 관계부처 합동)

## II. 시행근거

- 「영세 중소기업·소상공인 신속·전액보증 운용지침」 제정 시달  
(‘20.3.30., 중소벤처기업부)
- 「영세 중소기업·소상공인 신속·전액보증」 제정(‘20.3.30., 이사장 결재)

## III.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연 매출액\*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(신기술 사업자에 한함)

\* 당기 매출액, 최근 1년간 매출액 및 최근 3개년(전전기, 전기, 당기) 평균매출액 중 적은 금액

### □ 세부 지원 내용

- (대상채무) 운전자금
- (보증한도)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하
- (보증금액 사정) 보증금액 사정생략
- (보증비율) 100% 전액보증
- (보증료율) 0.5%p 감면(중복감면 불가)

- (평가모형) KTRS-BM 평가모형 적용 가능
- (보증가능등급) 기술사업평가등급 CCC 이상
  - CCC등급인 기업은 같은 기업당 1억원 이하 지원 가능
- (평가의견)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기술평가서 평가의견 작성 생략
- 전결권
  - 기술사업평가등급 CCC등급인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B등급에 따른 전결로 취급가능. 다만, 저축보증 제외
  - 「보증심사운용요령」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에 불구하고 영업점장 (영업소는 영업소장)이 전결
  - 「보증심사운용요령」 제19조제2호·제3호에 해당할 경우 본부장 전결
  - 「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 업무처리방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'납입자본금 1억원 미만으로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보증 3억원 초과 시 차상위 전결권자 전결' 미적용

#### □ 기타 사항

- (기술사업계획서) 약식 기술사업계획서(보증용) 수집 원칙\*
  - \* 같은 기업당 1억원 이하의 경우 수집 생략
- (표준처리기간) 기술평가(조사) 기간을 2일로 표준처리기간을 단축
- (무방문 약정) 현장조사 시 약정서류 접수

#### □ 전산관리

- 보증 신청·접수 시 한시자금 종류 란에 “556(영세 중소기업·소상공인 신속·전액보증)” 입력
- 보증품의서 작성 시 신청기업/우대부문 란에 “영세 중소기업·소상공인 신속·전액보증” 기재

- 「코로나19 특례보증」과 동시 진행시, 지원유형에 따라 한시자금 코드\* 동시 입력

\* 552(코로나19 특례보증\_Track1\_가①②③), 553(코로나19 특례보증\_기타), 554(코로나19 특례보증\_위기지역(대구·경북)) 입력

##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특별출연 및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협약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
  - \* “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”과 동시 적용 가능
- 「코로나19 특례보증」 등 다른 보증과 동시 진행 시 가급적 한건의 보증서로 운용
- “원클릭보증”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은 가급적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무방문 신속 보증지원
- 본 보증 지원 기업은 장기·고액보증 감축대상 및 보증 일부해지 대상 제외
- 본 보증은 신보와 중복지원 불가하며, 신보 거래기업은 기보로 전환보증 후 보증 지원가능(중복보증 불가)
- 동 업무 취급자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정하는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

#### IV. 지원계획

□ (총량한도) 3,000억원

□ (운용기한) '20.9.30. (한도 소진 시 조기종료)

V. 시행일: '20.4.1.(심사일 기준)